

# 납품계약서

매수인 ○○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칭함)와 매도인 ○○주식회사(이하 "을"이라 칭함)는 "을"이 공급하는 제품(이하 "을"이라 칭함)을 "갑"을 구매자로 하고 "을"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.

## 제 1 조 【발주내역】

1. 품 명 :
2. SPEC :
3. Style No :
4. 단 가 : 일금 \_\_\_\_\_ 원정 (W \_\_\_\_\_)
5. 수 량 :
6. 금 액 : 일금 \_\_\_\_\_ 원정 (W \_\_\_\_\_)
7. 납 기 : 20 년 월 일

단,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, 수량, 납기 등은 "갑"과 "을"의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 2 조 【원·부자재】

1. "을"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"갑"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·부자재를 자체 조달,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포장자재 및 LABEL, TAG는 "갑"이 공급한다.
2. "을"이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"갑"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·부자재는 "갑"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, 포장자재 및 LABEL, TAG도 "갑"이 공급한다.

## 제 3 조 【견품승인】

"을"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"갑"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품에 대한 "갑"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.

## 제 4 조 【하도급 금지】

"을"은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"갑"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, 이에 위반할 시는 "갑"의 처리에 따른다.

## 제 5 조 【비밀유지의무】

"을"은 "갑"이 제조 요청한 제품의 DESIGN(PATTERN 포함) 및 KNOW-HOW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생산완료 후 "갑"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을 "갑"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.

## 제 6 조 【검 사】

1. "을"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"갑"이나 "갑"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2.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"갑"의 검사기준에 의한다.
3. 제품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.
  - 1) 검 사 명 :
  - 2) 검사 세부내역 :
  - 3) 검사기관 :
  - 4) 검사등급 :

## 제 7 조 【불합격품의 처리】

1. 생산된 제품은 "갑"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나

-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,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.
- 불합격품 중 B급은 "갑"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○%로 인수할 수 있으며 "갑"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"을"은 "갑"의 동의 하에 LABEL 및 TAG을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.
  - "을"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.

#### 제 8 조 【상표관리】

- "을"은 "갑"이 요청한 제품에 "갑"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 또한 "을"은 작업 완료 후 "갑"의 지시에 따라 LABEL 및 TAG 잔량 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"갑"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.
- "을"은 자사 또는 타인의 제품에 "갑"의 상표, 상호 또는 LABEL,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.

#### 제 9 조 【납 품】

- 제품의 납품은 "갑"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(B급 중 "갑"이 인수기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)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.
- 납품은 LOT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품의 납품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며 "을"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.
- 납품장소는 "갑"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#### 제10조 【대금결제】

"을"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, "갑"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. 단,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 우려가 있는 경우 및 "을"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"갑"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 【손해배상】

- "을"은 "갑"이 제공한 DESIG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.
- "을"은 검사 불합격품, 재고제품 또는 "갑"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시중에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○%를 손해배상금으로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미 유출 잔량 분은 전량 "갑"에게 무상 기속하기로 한다. 단, "갑"의 상표, 상호 또는 LABEL,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시중 유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정상판매가격의 ○%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 【납품 불이행】

- 수 량 : "을"의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○%를 손해배상으로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납 기 : "을"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금액의 ○○씩 배상하며 ○일 이상 지연 시 ○일 단위로 지연배상율을 배증하여 적용한다.

#### 제13조 【담보제공】

- "을"은 본 계약의 이행 및 "을"이 생산,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, 기타 예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"갑"의 요청에 의거 근저당 또는 기타 "갑"이 인정하는 담보를 "갑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"을"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, 제품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"을"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"갑"은 최고 또는 이행의 제공 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**제14조 【유효기간】**

1.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 까지 유효하며 쌍방향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2. 본 계약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손해배상의무 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.

**제15조 【양도금지】**

"을"은 "갑"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기한 "을"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, 이전하지 아니한다.

**제16조 【분쟁해결】**

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.

**제17조 【특약사항】**

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- 1.
- 2.
- 3.

**제18조 【기 타】**

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일자 : 20   년   월   일

(갑) 주 소 :  
 회 사 명 :  
 대 표 자 : ○ ○ ○ (인)  
 연 락 처 :

(을) 주 소 :  
 회 사 명 :  
 대 표 자 : ○ ○ ○ (인)  
 연 락 처 :